



| 보도         | 2024.4.12.(금) 조간 | 배포  |     | 2024.4.11 | .(목)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공시심사실            | 책임자 | 실 장 | 조치형       | (02-3145-8420) |
| <br>  담당부서 | 공시심사기획팀          | 담당자 | 팀 장 | 김준호       | (02-3145-8422) |
|            | 기업공시국            | 책임자 | 국 장 | 오상완       | (02-3145-8100) |
|            | 기업공시총괄팀          | 담당자 | 팀 장 | 조성우       | (02-3145-8475) |

#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.

< 요 약 >

| □ 최근 자본시장에서 | 기업지배구조 | 및 <b>주주환원</b> | 등에 대한 | 투자자 | 관심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|

- 증대로 **주주제안권**\*이 행사된 **기업 수**가 **증가**하고 있으나 \*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
- **명확한 작성지침 부재** 등으로 **주주제안 관련 정보**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- 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<sup>●</sup>주주제안권 제기사실, <sup>②</sup>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, 6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·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(사업·분반기)에 충실히 기재될 수

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.(\*24.4.12. 시행)

- ▶ (주주총회 前) 주주총회 1주일 전 제출되는 **사업보고서** 등 정기보고서에 제출일까지의(기존에는 사업연도말까지)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사실 및 처리경과(행사자, 주총 안건포함 여부, 거부사유 등)를 상세히 기재
- ▶ (주주총회 後)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결과를 기재하되, 주주제안 안건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등 상세 정보를 기재
- □ 금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은 투자자에게 주주총회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적시에, 충실히 제공할 수 있게 되어
  - o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금감원은 **건전한 자본시장 형성**을 위해 **추가 보완**이 필요한 부분을 **지속적으로 발굴·정비**할 예정입니다.

### I. 배 경

- □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이사선임, 배당 등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로
  - 최근 **기업지배구조** 및 **주주환원** 등에 대한 투자자 **관심 증대**로 주주제안권 **행사 기업 수**가 **증가**\*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[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(12월결산 법인)] : ('20년) 26사 → ('21년) 22사 → ('22년) 27사 → ('23년) 46사 → ('24년) 40사
- □ 한편, 현재에도 주주제안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정기 보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, 제한된 기재범위 및 명확한 작성 지침 부재 등으로 적시에 충분하게 공시되고 있지 않아
  - 투자자는 언론을 통한 제한된 정보를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합리적 의사 판단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- 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<sup>●</sup>주주제안 제기사실, <sup>②</sup>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, <sup>③</sup>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
  - 일련의 과정들을 주주총회 전·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,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\*을 거쳐 작성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('24.4.12. 시행)
    - \* '24.2~3월 중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실무논의

### 참고 상법상 주주제안권 제도 개요

- □ (개관) 일정한 사항을 **주주총회 안건**으로 **상정**해줄 것을 **회사에 제안**할 수 있는 상법상 주주의 권리로, 주로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해 활용
  - **제안권 행사기한**은 주주총회 6주 전, **제안 대상 범위**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한정
- □ (요건)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3%\* 이상 보유시 행사 가능
  - \* 상장회사 : 6개월 전부터 1%(자본금 1천억 이상시 0.5%)이상 보유시 가능
- □ (안건상정 의무)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는 경우 등 법상 거부사유\* 이외 에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함
  - \* (상법 시행령 §12) 법령·정관 위배하거나, 3년내 10% 미만으로 부결된 안건, 주주 개인 고충 관련사항, 임기 중의 상장사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등

## Ⅱ. 주요 개정내용

### 1 [주주총회 前] 주주제안 행사현황 및 처리경과 공시

- ① (작성기준 강화)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합니다.
  - (현행) 공시기준상 사업연도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은 사업 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\*, 실제 당해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\*\* 있습니다.
    - \* '24년 3월말까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경우 '23.12월까지가 작성대상 기간임
    - \*\* 작년('23년) 정기주총의 경우 주주제안권 행사기업의 56%가 행사현황을 未 공시
  - □ (개선)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은 사업보고서(주총 1주 전 제출)
   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하여, 투자자가
   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② (기재내용 상세화) 주주제안권 행사자, 안건내용,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여부 및 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.
  - (현행)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기재시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고 행사자, 진행경과 등 세부 정보를 미기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.
  - □ (개선) 기재사항을 행사자, 주총 목적사항(안건) 포함여부, 거부사유,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하여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### ※ [사업보고서 개정서식 및 작성예시] Ⅵ. - 3. - 나. 소수주주권

(1) 주주제안권

| <u>행사자</u> | <u>안 건</u>  | <u>목적사항</u><br>포함여부 | <u>거부사유</u>           | 진행경과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AAA        | 사외이사 홍길동 선임 | 0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| - '23.x.xx. 접수<br>- '23.x.xx. 의안상정<br>가처분 신청 |
| BBB        | 현금배당 주당 XX원 | X                   | 상법상 불가<br>(배당가능이익 없음) | _  |

## 2 [주주총회 後] 주주제안 안건 등 주주총회 결과 공시

- ① (작성기준 강화)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 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.
  - (현행) 공시기준상 주주총회 관련사항(제7장제3절)은 분기보고서기재 생략이 가능하여,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는 약 5개월 이후인
     8월 중순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에 세부 결과가 공시\*됩니다.
    - \* 주주총회 직후 거래소 수시공시(주주총회 결과)가 이루어지나 가결 여부만 간략히 공시
  - □ (개선)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② (기재내용 상세화) 주주총회 결과에는 안건명, 결의내용 뿐만 아니라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.
  - (현행) 현재 주주총회 결과 기재사항에는 주주제안 안건의 별도
     표시 의무가 없고, 안건 제목과 가결여부만 간략히 공시되고 있습니다.
  - □ (개선) 향후 주주제안 안건 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을 반드시 기재\*토록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 하여 주주총회 결과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    - \* 주총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실제 주주총회시 안건내용과 관련한 질의 응답 및 찬반토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 기재해야 함

| * | [사업보고서 | 개정서식 | 및 작성예시] | IV 3 H. | 주주총회 | 의사록 | 요약 |
|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|----|
|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|----|

| <u>주총정보</u>                 | <u>안 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결의내용</u> | 주요 논의내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1.'22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<br>이익배당(안) 승인의 건(회사제시) | 가 결         |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<br>축적 필요성 제기  |
| 제15기<br>정기주총<br>(2023.3.24) | 1-2. 이익배당 승인의 건(주주제안)                      | 부 결         | 1-1 가결에 따라<br>자동 부결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사외이사 홍길동 선임의 건(주주제안)                    | 가 결         | 홍길동의 전문성 및 업무<br>적합성을 논의, 사외이사<br>결격사유에 대한 질의가<br>있었으나 적합한 것으로 답변 |

### Ⅲ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□ 금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, 충실히 공시됩니다.
  -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□ 향후, 금융감독원은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·교육 하는 한편,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·정비할 예정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# 참고 1 신구조문 대비표

| <br>현 행   | 개정안  |
|---|--|
|   |  |
| 제7장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 | 제7장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|
| 제7-3-2조(소수주주권) 공시대상기간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 행사된 소수주주권의 내용, 행사목적, 진행경과 등을 기재한다. | 제7-3-2조(소수주주권) 공시대상기간중 소수<br>주주권이 행사된 경우 행사된 소수주주권의<br>내용, 행사목적, 진행경과 등을 기재한다.   |
| <신 설>   | 【 작성지침 】   |
|   | i.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<br>사이에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에도<br>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.  |
|   | ii.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제안된 안건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포함 여부, 거부시 그 사유 및 진행경과를 기재한다.   |
|   | 행사자         안건*1         목적사항         거부         진행           포함여부         사유*2         경과*3   |
|   |  |
|   | *1 안건 및 안건의 내용 기재  *2 주주총회 권한사항이 아닌 주주제안 여부  및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등 상법 시행령(§12)에 따른 거부 사유 등 거부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*3 제안접수일,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등 진행 경과 기재 |
|   | 제7-3-6조(주주총회 의사록 요약) 공시대상기간<br>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해서 일자, 총회   |

- 6 -

<u>따라 기재한다.</u>

의사록에 기재된 <u>안건 및 결의내용, 기타 주주</u>

총회에서의 주요 논의내용을 하단의 표에

의사록에 기재된 안건 및 결의내용 등을 요약

하여 기재한다.

| 개정안 |
|-----|
|     |

| <br>주총<br>정보 | 안건       | 결의<br>내용* | 주요<br>논의내용 |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01           | 제1호 의안   | 410       | L-1410     |  |
| 제xx기         | : XXXX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 정기주총         | 제2호 의안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 (2020.3.31.) | : XX 승인건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| (주주제안)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| 제1호 의안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 제xx기         | : XX 승인건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 임시주총         | 제2호 의안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 (2021.4.24.) | : XX 승인건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| (주주제안)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 •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|

#### \* 안건의 가결여부

#### 【 작성지침 】

- i. 안건에 대하여 표결이 있거나 의사진 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었던 경우 에는 안건의 제목, 이의제기의 내용, 경과 및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.
- ii.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.

#### 【 작성지침 】

- i.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.
- <u>ii. 안건에는 주주제안 여부를 괄호안에 포함</u> 하여 기재한다.
- iii. 주요 논의내용은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요약 기재하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약기재한다.
- <u>가. 주주제안 안건인 경우 주주제안자의</u> 안건 설명내용
- <u>나. 안건 결의과정 중 질의응답, 찬반토론</u> <u>과정이 있었을 경우 그 주요내용 및 결론</u>
- <u>다. 주주총회 진행과정에서 안건의 내용이</u> <u>일부 수정되었을 경우 수정 전후 안건의</u> 내용, 수정 사유 등

| 현 행 | 개정인 |
|-----|-----|
|     | 101 |

<별지 제35호 서식> : 사업보고서(반기·분기) <별지 제35호 서식> : 사업보고서(반기·분기)

사 업 보 고 서(반기・분기) 사 업 보 고 서(반기・분기)

VI. **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** 

Ⅵ.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

3.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

3.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

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장제3절(주주총회 및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)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.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장제3절(주주총회 및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)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.

#### 【 작성지침 】

- i. 반기보고서의 경우 사업연도 중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-3-1조부터 제7-3-3조까지 및 제7-3-5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ii. 분기보고서의 경우 제7장제3절을 기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【 작성지침 】

- i. 반기보고서의 경우 사업연도 중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-3-1조부터 제7-3-3조까지 및 제7-3-5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ii. 분기보고서의 경우 제7장제3절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u>다만, 공시대상 기간 중 주주총회가 개최된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 제7장</u>제3절을 기재하여야 한다.

- 1. '24년 3월에 사업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금번 개정서식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제출일 전까지의 주주제안 행사내역을 추가 기재하여 정정하여야 하는지?
- □ 금번 개정서식의 시행 전 제출된 사업보고서의 정정의무는 없음
  - 개정서식 시행일은 기업의 **개정서식**에 대한 **이해 등 준비기간**을 **고려**하여 '24. 4. 12. 로 하였음
  - 따라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분·반기 보고서,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기재하면 됨
  - 2. 공시대상기간(3년) 중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해 모두 개정서식을 적용하여 주주총회 결과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?
- □ **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에 모두 개정서식을 적용**하여 작성 해야 함
  - 다만, 작성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'주요 논의내용'\*의 경우 '24년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내용
     뿐만 아니라 실제 주주총회에서 발생한 논의내용을 요약 기재하고

| * | 주총정보 | 안건 | 결의내용 | │ ↑주요 논의내용 |
|---|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|

○ **이전 주주총회**의 경우 **주주총회 의사록**에 논의내용이 **기재된 경우** 그 내용만 기재해도 무방함